

<p>를 고조시키어 우수한 기능인의 육성과 산업기술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는 직업훈련원을 직업전문학교로 변경하는 것은 산업사회의 환경에 맞는 적절한 명칭인 것으로 생각됩니다.</p>	<p>많이 봤을텐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. 參考해 주시기 바랍니다.</p>
<p>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</p>	<p>○委員長 李敏國 局長님께서서는 李昌根委員님의 말씀을 깊이 參考해 주시기 바랍니다.</p>
<p>○鞠應好委員 檢討事項 中에 하나 質問하겠습니다.</p>	<p>더 質疑하실 委員님 계십니까? (「없습니다」하는 委員 있음)</p>
<p>專門委員, 그것이 教育法上과 서로 相衝되는 問題點을 檢討해 봤어요?</p>	<p>이상으로 質疑答辯을 終結하겠습니다. 그러면 서울特別市立靑少年職業訓練院設置條例</p>
<p>○專門委員 李贊穆 네, 이 職業訓練院은 教育法하고는 관계 없고, 다만 職業訓練基本法하고만 관계 있습니다.</p>	<p>中改正條例案을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異議 없으십니까?</p>
<p>○鞠應好委員 基本法에 의해서 根據가 되는데 教育法과 相衝되는 점은 檢討 안해 봤어요, 관계 없어요?</p>	<p>(「없습니다」하는 委員 있음)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.</p>
<p>○專門委員 李贊穆 教育法은 檢討했는데 이것하고는 관계 없습니다.</p>	<p>(議事棒 3打)</p>
<p>○委員長 李敏國 수고하셨습니다. 이상으로 提案說明과 檢討報告를 잘 들었습니다.</p>	<p>..... (參 照)</p>
<p>그러면 本 案件에 대하여 質疑하실 委員님 있으면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.</p>	<p>서울특별시립靑少年職業訓練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립靑少年職業訓練원설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명 중 “직업훈련원”을 “직업전문학교”로 한다. 제1조 중 “서울특별시립靑少年職業訓練원(이하 “훈련원”이라 한다)을” “서울특별시립靑少年職業전문학교(이하 “전문학교”라 한다)로” 한다. 제2조 중 “훈련원은”을 “전문학교는”으로 한다. 제3조의 제목 “(원장)”을 “(교장)”으로 하고, 동조 제1항 중 “훈련원에 원장1인”을 “전문학교에 교장1인”으로 하며, 동조 제2항 중 “원장”을 “교장”으로 한다. 제4조 중 “훈련원”을 “전문학교”로 한다.</p>
<p>李昌根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.</p>	<p>부 칙</p>
<p>○李昌根委員 李昌根委員입니다.</p>	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
<p>인듯 얘기들으면 職業訓練院生이라든가 이런 분한테 상당한 배려를 執行部에서 하는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. 그런데 그런다고 친다면 昨年 12月 27日 同 法이 改正되었으면 진작 이런 것을 했어야 옳지 이렇게 압박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다음부터는 미리 미리 했으면 더욱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.</p>	<p>3. 서울特別市立社會福祉施設等設置및委託運營에 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(서울特別市長 提出) (11時 36分) ○委員長 李敏國 議事日程 第3項 서울特別市立社會福祉施設等設置및委託運營에 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을 上程합니다. (議事棒 3打) 産業經濟局長께서는 提案說明을 해 주시기 바</p>
<p>왜냐 하면 今年에 職業訓練院을 우리가 視察을 가봐도 거기에서도 院長님들이라든가 거기 선생님이 그런 얘기가 今年에도 있었어요, 여러 번 있었는데 이렇게 촉박하게 하지 않고 진작 했으면 今年에 우리가 視察가서도 그분들한테 좀더 希望的인 모습을 더</p>	